

구 분	이 사	감 사
임원정수	8 인	2 인
재적임원	8 인	2 인
참석인원	6 인	1 인

학교법인 우석학원

제 647회 이사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24년 6월 4일 16:00 ~ 17:30 (회의소집일 : 2024년 5월 21일)
2. 장 소 : 전북일보사 회장실
3. 임원 출결사항
 - 참석 임원
 - 이사(6인): 서창훈, 김남곤, 차덕호, 황재식, 함우식, 신태용
 - 감사(1인): 서갑두
 - 결석 임원
 - 이사(2인): 장세균, 박혜숙
 - 감사(1인): 김춘원
4. 심의안건 : 1안 정관변경(안)
 - 2안 2024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(안)
 - 3안 우석대학교 규정 개정(안)
 - 4안 고정자산 처분(안)
 - 5안 교육용기본재산 전세권 설정(안)
5. 개회선언

성원보고와 함께 의장이 개회선언 후 사무국과장은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음을 보고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다.
6. 심의안건
 - 가) 제1호 의안: 정관 변경(안)

서 창 훈	김 남 곤	황 재 식
-------	-------	-------

의 장 : 제1호 의안을 상정하고 사무국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.

사무국과장 : 2025년도 글로벌대학30 사업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대학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육부를 스포츠단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정관 제91조(하부조직) 1항과 2항을 개정하고자함을 설명하다.

■ 정관 변경주요내용

- 하부조직 신설(글로벌30추진본부, 스포츠단)

의장이 본 건에 대한 심의 결과 이의유무를 묻자 차덕호 이사의 동의와 김남곤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모두 동의하여 의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
나) 제2호 의안: 2024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(안)

의 장 : 제1호 의안을 상정하고 사무국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.

사무국과장 : (유인물을 배부하고) 우석대학교의 2024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침과 주요사업별 예산액 및 과목별 예산액을 자세히 설명하다.

· 우 석 대 학 교	2024학년 본 예 산	세입세출총액	83,410,005,000	원
교 비 회 계	2024학년 제1차 추경예산	세입세출총액	87,916,554,000	원
		증액분	4,506,549,000	원
		- 등록금회계 예산액	51,337,771,000	원
		- 비등록금회계 예산액	36,578,783,000	원
		- 내부거래제거	0	원

■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

-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사업 예산 증가
(고교,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, 지역품은 중고교연계사업)
- 생활관 누리동 개보수 공사비 배정
- 학부 및 대학원 학과운영경비 재배정
- 과목간 사업비 조정
- 결산이월금 예산 배정

의장이 본 건에 대한 심의결과 이의유무를 묻자 황재식 이사의 동의와 함우식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모두 동의하여 의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
서 항 훈

김 남 곤

황 재 식

다) 제3호 의안: 우석대학교 규정 개정(안)

의 장 : 제3호 의안을 상정하고 사무국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.

사무국과장 : 우석대학교 교무위원회 논의 및 심의를 거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.

■ 주요내용

-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
 - 진천부총장, 산학협력부총장 명칭을 ‘부총장’으로 통일
 - RIS추진단장의 책임시간 추가 및 하부기관으로 팀, 센터를 두는 보직의 책임시간 변경
- 교원인사규정
 -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거나 겸직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외부기간에 겸직하는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
-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규칙, 성과급적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,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
 - 전임교원의 업적평가에 대한 항목을 다각화하여 개정
- 직제규정
 - 2025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확정에 따른 기구표 개정
 - 조직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
(글로벌30추진본부, 스포츠단, 통일교육센터, 전공설계지원센터)
 - 2025학년도 학사구조개편 확정에 따른 기구표 개정
 - 체육부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항 조정(제29조(부속기관장) ‘7급이상’의 문구 삭제)

의장이 본 건에 대한 심의 결과 이의유무를 묻자 신태용 이사의 동의와 김남곤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모두 동의하여 의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
라) 제4호 의안 : 고정자산 폐기 처분(안)

의 장 : 제4호 의안을 상정하고 사무국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.

사무국과장 : 우석대 토양오염센터에서 사용중인 장비가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32조에 의거 폐기처분 하고자함을 설명하다.

■ 폐기처분 대상

- 대상 : 우석대 토양오염센터 (가스크로마토그래픽)
- 사유 :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증가 및 시료 분석시 불안정한 상태로 사용이 불가함.

의장이 본 건에 대한 심의 결과 이의유무를 묻자 차덕호 이사의 동의와 황재식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모두 동의하여 의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
서 황 훈

김 남 곤

황 재 식

마) 제5호 의안: 교육용기본재산 전세권 설정(안)

의 장 : 제5호 의안을 상정하고 사무국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.

사무국과장: 교육용기본재산의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요청이 있어 전세권 설정을 하고자함을 설명하다.

■ 재산의 표시 (단위 : m²)

구분	소재지(등기부 등본상 주소, 건물명)	지번	지목/구조	면적(m ²)
집합건물 아파트	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(코오롱하늘채아파트 109/1402)	746-1	대지/철근콘크리트구조 집합건물	123.8

■ 전세권 설정 내역 (단위 : m², 원)

사용청(호)	임대면적	임대보증금	설정금액	설정기간	등기원인자
109동1402호	123.8	415,000,000	415,000,000	24개월 (24.05.27~26.05.27)	하점순

의장이 본 건에 대한 심의결과 이의유무를 묻자 함우식 이사의 동의와 신태용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모두 동의하여 의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

이상으로 심의 및 보고를 마치고 의장이 회의록 간서명을 해주실 3명의 이사를 의장, 김남곤 이사, 황재식 이사가 간서명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자 참석이사 모두 이에 동의하다.

7. 폐회선언(17시 30분)

의 장 : 이상으로 제647회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·의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폐회를 선언하다.

서 창 훈	김 남 곤	황 재 식
-------	-------	-------

학교법인 우석학원 이 사 장 서 창 훈 서 창훈

이 사 김 남 곤 김남곤

차 덕 철 덕훈

황 재 식 황재식

함 우 식 함우식

신 태 용 신태용

감 사 서 갑 두 서갑두

서 창훈

김 남곤

황 재 식

「우석학원 정관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 (안)
제91조(하부조직)	①총장직속으로 비서실, LINC 3.0 사업단, 특성화추진단, 대학일자리본부, 창업지원단, 교육혁신본부, 국제교류원, 새만금연구단, 인권센터, 홍보실을 둔다. ② LINC 3.0 사업단, 특성화추진단, 대학일자리본부, 교육혁신본부, 국제교류원의 장은 교원으로 보하고, 비서실, 창업지원단, 홍보실의 장은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다만, 새만금연구단, 인권센터의 장은 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보한다. ③대학교에는 교무처, 기획처, 입학처, 학생취업처, 사무처를 둔다. ④각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다만, 기획처장, 사무처장은 일반적으로 보할 수 있다. ⑤각 처에는 하부 부서를 둘 수 있으며, 각 부서는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⑥각 처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 ⑦대학교에 교육, 연구진흥과 학교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. 특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	제91조(하부조직)	①총장직속으로 비서실, LINC 3.0 사업단, 특성화추진단, 대학일자리본부, 창업지원단, 교육혁신본부, 국제교류원, <u>글로벌30추진본부</u>, <u>스포츠단</u>, 새만금연구단, 인권센터, 홍보실을 둔다. ② LINC 3.0 사업단, 특성화추진단, 대학일자리본부, 교육혁신본부, 국제교류원, <u>글로벌30추진본부</u>, <u>스포츠단</u>의 장은 교원으로 보하고, 비서실, 창업지원단, 홍보실의 장은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다만, 새만금연구단, 인권센터의 장은 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보한다. ③~⑦ 좌 동
		부 칙	이 변경 정관은 2024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서 창 훈

김 남 문

황 재 식